

# 의안 검토 보고서

1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08. 2. 21.          심준홍 의원 외 8인
2. 건      명 :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3. 안건요지 : 따    로    붙    임
4. 검토의견 : 따    로    붙    임

위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.

2008년    2월    일

산 업 건 설 위 원 회  
전문위원 이 환 구

# 검 토 보 고

본 안건은 2008년 2월 21일 심준홍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08년 2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## 1. 제안이유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가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서 위임된 개발행위허가시 입목본수도를 완화하는 사항을 규정함(안 제 29조).

나.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함(안 제62조).

## 3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등 관련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,

- 안 제29조에서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이미 시가화용지로 계획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입목본수도 기준을 당초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완화하고 녹지지역에 대하여는 40퍼센트로 완화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,
- 안 제62조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기존에는 행정부시장으로 하였으나,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,
- 금번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완화 적용되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, 이와 병행하여 불법, 무질서한 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업무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